



## 행정 방침 설명서

### 1항: 목적

수도중단 보호법에 의해 (캘리포니아 보건안전법 §§ 116900 – 116926), 시는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 절차가 나온 방침을 이에 채택합니다. 또한, 주거용 수도서비스는 계정을 중단하기 전 최소한 육십(60)일까지 체납상태여야 합니다.

### 2항 : 방침

주거용 수도서비스 계정이 육십(60)일 이상 체납상태면, 시는 수도중지 보호법에 해당되는 경우 법을 준수한 이후 수도서비스를 중지하게 됩니다. 이 방침은 체납된 계정을 현상태로 하고 미납으로 인한 주거용 수도서비스의 중지를 막기 위해 시 고객에게 알려주는 지침서입니다. 이 방침이 시 규칙, 규정, 방침과 상충하는 경우, 이 방침이 우세합니다. 이 방침은 비 주거용 서비스 계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3항 : 납부약정

고객은 중지통지서를 받고 난 후 계정에 납부 연장을 신청해도 됩니다. 시는 재량으로 연장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은 중지 통지서의 최종납부일이 지나고 칠(7)일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고지서가 4개 이상인 계정은 연장을 허가받지 못합니다.

고객은 중지통지서를 받고 난 후 분할납부 약정을 신청합니다. 고객이 부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시는 재량으로 분할납부 약정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약정에서 십이(12)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에 체납금을 완납할 것을 규정해야 합니다. 만일 3항으로 연장이나

납부약정을 허가받은 고객이 연장된 납부일까지 또는 납부약정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시는 수도서비스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 4항: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는 특별한 의료적 경제적 상황.

##### A. 조건

다음 세가지(3) 조건에 전부 충족하면 시에서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합니다.

1. 고객이나 고객의 세입자가 수도서비스를 중단하면 주거용 서비스를 받는 장소의 주민에게 생명이 위협해지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면허있는 의사의 증명서를 시에 제출하는 경우
2. 고객은 시의 정상 청구주기에 주거용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고객은 정상 청구주기에 요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 a. 고객의 가족이 캘럭시, 캘프레시, 일반보조금, 메디칼, 캘리포니아 SSI/SSP, 여성, 신생아, 어린이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보조 영양프로그램을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또는
  - b. 고객은 가족수입이 연방 빈곤수치의 이백퍼센트(200%)를 넘지 않는다고 위증의 처벌하에 서약합니다. 고객이 서약할 증명서를 드립니다.
3. 고객은 시와 체납요금의 연장이나 요금납부약정에 대한 약정을 맺을 의사가 있습니다. 시는 약정에 정해진 납부약정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약정은 십이(12)개월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 **B. 고객의 증명과 시에서 자격조건을 검토함**

고객은 위의 4.A항의 자격조건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서류를 받고 나면, 시에서 칠(7)일까지 서류를 검토하고 (a) 시가 정한 조건을 고객에게 알려주며 납부약정에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b) 고객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합니다. 또는 (c) 고객이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통보합니다.

## **C. 불응**

4항에 따라 납부약정을 허가받은 고객이 육십(60)일 이상 다음과 같이 하지 않으면 수도서비스를 중단합니다. (i) 납부약정에 따라 요금을 납부합니다. 또는 (ii) 납부약정이 유효한 기간동안 현재 수도 요금을 납부합니다. 시는 서비스를 중단하지 오(5)영업일 전에 서비스 주소에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최후 통지서를 게시합니다. 최후 통지서로 인해 고객이 5항에 따라 시의 조사나 재고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 **5항: 법안을 항소하거나 분쟁하는 절차**

### **A. 법안을 항소하거나 분쟁하는 절차.**

수도서비스의 고지서의 정확성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기록상 고객은 문제의 고지서를 받고난 후 십(10)일까지 고지서 요금에 대한 항소를 시작하거나 조사를 요청합니다. 항소서류에서 증거자료나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경리부장이나 회계부장은 적시에 신청한 항소나 조사 요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고객이 미납요금에 대한 후불제나 할부약정을 받는 여부를 참작하게 됩니다. 분쟁 조사를 받는 동안, 또는 항소하는 동안 수도서비스는 수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시는 재량으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분쟁이나 조사 요청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분쟁이나 요청은 항소하지 못합니다.

## **B. 경리부에 항소하기**

항소인이 경리부장이나 회계부장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경리부장의 판결이 나고 십(10)일까지 경리부장에게 항소를 제출합니다. 항소를 제출한 후, 경리부장은 십(10)일까지 항소인에게 응답합니다.

고객이 위원회의 응답에 불복하면, 답변서의 날짜로부터 십(10)일까지 위원회에 심리를 요청하고 응답을 항소합니다. 심리는 가능한 빨리 날짜를 정하며, 항소인은 심리 시간과 장소가 나온 통지서를 받습니다. 심리를 하고 난 후, 위원회는 십(10)일까지 항소인에게 판결을 문서로 통보합니다.

## **6항 : 시의 연락처**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막는 방법 등 수도요금에 대한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시의 고객상담원은 626-580-2024으로 정상영업시간에 문의하거나 [water@elmonteca.gov](mailto:water@elmonteca.gov) 으로 이메일하십시오. 정상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 30분이며 금요일과 공휴일은 휴업합니다.